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0-53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0년 11월 9일  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안이유

현재 우리 구는 관내 거주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구 행정을 경험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있음. 이에 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체계적 운영은 물론 사업 참여자(학생)에게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아르바이트 지원 자격 및 운영시기, 방법(안 제2조~제4조)
- 나. 아르바이트의 신청 및 선발(안 제5조~제6조)
- 다. 아르바이트 프로그램 운영(안 제8조)
- 라. 보상 지급 및 표창, 혜택 부여(안 제10조~제11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323, FAX : 820-1474, E-mail : jurakim@dongjak.go.kr)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행정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지원 자격)** 학생 아르바이트(이하 “아르바이트”라 한다)의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서울특별시 동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(이하 “학생”이라 한다)
2.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

**제3조(운영시기)**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.

1. 정기 아르바이트: 매년 학생의 여름 또는 겨울 방학 기간
2. 수시 아르바이트: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**제4조(운영방법)** ①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아르바이트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전달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시 아르바이트를 필요로 하는 부서로부터 필요인원, 근무형태, 근무기간, 근무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.

- ③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에 5일 이상 아르바이트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시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**제5조(신청)** ① 아르바이트 지원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정한 기한 내에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근무지 배치 시 활용되며 신청사유, 전공, 희망 분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**제6조(선발)**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서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하며, 모집인원 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선발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그 자녀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 계층 및 그 자녀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4. 법령에 따른 취업보호대상 및 취업지원대상자
5. 다자녀 가구의 자녀(3자녀 이상,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)

- ② 그 밖의 세부적인 선발절차 및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7조(등록 및 배치)** ① 제6조에 따라 선발된 학생(이하 “선발학생”이라 한다)은 등록기간 내에 제2조에 따른 지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구청장은 아르바이트가 선발학생에게 건설적인 경험이 되고 부서에서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서 수요조사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프로그램 운영 등)** ①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필요시 구정의 주요시책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**제9조(증명서 교부 등)** ①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선발학생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는 근무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및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·관리 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보상 지급)**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선발학생에게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.

**제11조(표창 및 혜택)**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선발학생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탐방·국제교류·취업 프로그램 참여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
**제12조(시행세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